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7. 4.19 개정 2007.12.18
개정 2017. 5.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정관 제31조의 9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 - 5명
2. 직원 평의원 - 5명
3. 학생 평의원 - 1명

②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 : 국제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인 자, 다만 총장, 부총장, 처장, 미래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평생학습추진본부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2. 직원 평의원 : 국제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3. 학생 평의원 : 국제대학교 학생으로 재학중인 자

③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④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4조(위촉) ① 교원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전체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직원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 평의원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평의원은 평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평의원은 제2조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평의회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도록 해당 구성단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총장은 평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평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통보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의결권)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제시) 평의회는 평의회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및 회의의 공개) ① 평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평의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평의회 회의결과를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평의회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밀유지) 평의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회회를 통하여 합의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간사) ① 평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 및 평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감사

제17조(개방이사 추천)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의 경우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법인 정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1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국제대학교 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대학평의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규정 개정) ① 정관에 명시된 평의회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 규정의 관련 조항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정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